교원 신규임용 세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거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
- 제2조(응시자격) ① 우리 대학은 예체능 특성화대학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예·체능 및 특정분야(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는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2.1>
 - ③ 예술계는 개인전시·공연 등, 기타계열은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연구 실적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200%이상이어야 한다.
- 제3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1차평가(전공 및 연구업적평가), 2차평가(강의능력평가) 및 3차평가(면접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정년계열전임교원과 외국인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자의 평가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위원들의 평가치가 판이하게 다를 경우 교학지원처장은 그 이유를 밝힌 사유서를 평가위원들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전형절차 및 채용은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신설 2015.1.13>
 - ④ 교원수급계획은 기획조정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의하되, 채용분야와 인원은 교학지원처장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신설 2015.2.1><개정 2017.09.25>
 - ⑤ 총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신설 2015.1.13>
- 제4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교학지원처장 주관 하에 교학지원처에서 실시한다.
 - ②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2. 자기소개서 1부
 -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평점평균 기재) 각 1부
 - 4.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년월일, 논문개요 기재) 각 1부
 - 5. 최종 학위논문 및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 200% 각 3부
- 6. 외국 석・박사학위취득자는 석・박사학위신고 접수증(한국연구재단) 사본 1부<신설 2015.1.13>
- 제5조(전공 및 연구업적평가) ① 전공일치여부 평가와 연구실적물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전공일치여부의 평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지원자의 최종학위논문을 대상으로 5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연구업적 평가는 200%의 연구실적물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100% 당 각각 5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를 환산 반영한다.
 - ④ 전공 및 연구업적평가위원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장의 2배수 추천(전공주임교수 당연직)으로 교학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1인을 포함시킨다. 외부 심사위원은 교학지원처장의 2배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전공의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이 교내 및 외부인사로 2배수를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3>

- (5) 예·체능계의 연구업적물은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증방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기타사항은 교학지원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 **제6조(강의능력평가)** ① 강의능력평가위원은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공주임교수를 제외한 위원은 교무지원처장이 2배수를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촉된 강의능력 평가위원들이 임석 하에 공개강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제7조(면접평가) ① 면접평가위원은 교학지원처장, 학부(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학부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학지원처장이 2배수를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3>
 - ② 면접평가는 각 평가위원이 총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를 60점미만 또는 9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사유를 필히 명기토록 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15.1.13>
- 제8조(총장평가) 서류심사와 1차, 2차, 3차 평가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여 올리면 총장은 임용 후보자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대학에의 기여 예상도, 임용 후 주생활 거주지와 평가절차상의 오류 및 평가사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제청 동의 의결 후 이사장에게 채용인원의 2배수를 임용 제청한다.
- 제9조(특별채용) 특별채용은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최종합격자의 결정절차) ① 서류심사는 "가", "부"로 결정한다.
 - ② 최종 임용예정 대상자는 서류심사, 1차평가(전공영역 및 연구업적평가), 2차평가(강의능력평가), 3차평가(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③ 최종 임용예정 대상자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한다. 단, 최종집계점수가 180점 미만인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1. 전공 및 연구업적평가 고 득점자
 - 2. 강의능력평가 고 득점자
 - 3. 면접평가 고 득점자
 - 4. 연령순(연소자)
- 제11조(업무절차) ① 신규교원 임용 시 제반심사에 관한 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주관한다.
 - ② 신규채용 심사과정 중 또는 심사 후에 당해 학부(전공)에서 채용유보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교원인 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및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실적물 평가표]

연구실적물 평가표

					J	1	원	H	Oŧ				
	학부(과))		?	전 공			지 원	분 야	성	명	비고	
	평	가연구	실적을	물 제	목								
					평		가	내	용				
丏0	가	내	11 6		평				점	평 가	조	합 의 견	
<u>1</u> 0	71	니		용	А	В	}	С	D	점 수	6	8 J C	
채	용분	야 근	접	도	10	8	}	5	2				
하	문 적	기	여	도	20	1.5	5	10	5				
연	구 실 적 들	물 형 식	·내	용	20	15	5	10	5				
합				계									

※ 평가방법 : 평가내용 평가점수 및 종합의견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의 평가물(연구실 적물)을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

년 월 일 ·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전공영역 평가표]

전공영역 평가표

		지	원 분	Oŧ						
학부(과)	전	공	지 :	지 원 분 야			성 명	비고		
		평	가 L	내 용	·					
평 가 내 용		평		점			평 가	비고		
평 가 내 형 	А	В	С	D	E	=	점 수			
전공(채용)분야 일치 여부	50	40	30	20	1(0				
심사요지 :										
※ 지원자가 제출한	※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논문을 평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강의능력 평가표]

강의능력 평가표

			지	원 분	Oŧ		
학부(과)		전 공		지 원 분	Oŧ	성 명	비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	평			점	평 가	종 합 의 견
ह ग पा ह	5	А	В	С	D	점 수	6 N 7 C
강 의 내	용	20	15	10	5		
동 기 부 여 및 연	결 성	20	15	10	5		
강 의 능	력	20	15	10	5		
0:0	도	20	15	10	5		
교 수 자 료 의	활 용	20	15	10	5		
ট্য	계						

※ 평가방법 :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점수 및 종합의견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면접평가표]

면 접 평 가 표

	XI	원 분 야	
학부(과)	전 공	지 원 분 야	성 명 비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평 가 점 수	평 가 사 유
대학교원으로	로 서 의 자 질		
교 육 발 전 에 그	기 여 가 능 성		
친 화 력·협 동	성 등 의 인 성		
신 체 적 건 전 성	및 건 강 상 태		
외 국 어 활	용 능		

※ 평가방법 : 5개분야의 평가내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점수를 기록하며, 60점미만 또는 9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사유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업적 평가위원 추천서]

연구업적 평가위원 추천서

성명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직급				
	상기자를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하여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연구업적(전공영역)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별지 제2-1호 서식 강의능력 평가위원 추천서]

강의능력 평가위원 추천서

성명	
소속	학부(과) 전공
직급	
	자를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학부·과 () 하루

년 월 일

부서장(추천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면접평가위원 추천서]

면접평가위원 추천서

성명		
소속	학부(과) 전공	
직급		
상기: (자를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학부·과)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면접평가위원으로 추천합	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추천인) : (인)

예원예술대학교교수초빙지원서

1. 인적사항

초 빙 전공분야		접수 번호		
성 명	인 (한자:)		사 진
주 소	우(-)			
주민등록 번 호	-			
연 락 처			전화 번호	(自) (事) (핸드폰)

2. 학 력

구 분	학 교 명	학 과 명	전 공	수 학 기 간	학 위 명 (학위취득일)
고등학교					
학 사					
석 사					
박 사	-				_

3. 교육경력(교수, 조교, 강사 등의 경력)

임용기간 (~)	임용기관(근무처)	직 명(직위)	담 당 직 무	비고

※모든 경력은 증빙서가 첨부되어야함

4. 기타 경력

기 간 (~)	임용기관(근무처)	직 명(직위)	담 당 직 무	비고

※모든 경력은 증빙서가 첨부되어야함

5. 최종학위논문

논문종류	논	문	제	목	발표년월일	비고

. 최종학위논문 내용요기	الا 		

※국문으로 작성

6. 연구실적물 목록

(석.박사 학위논문과 해당 전공분야에 일치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200% 이상의 모든 연구실적물을 연도순으로 기재)

일련 번호	논문종류	논	문	제	목	연구자	발 표 년 월	게 재 지 명	연구자수 (본인포함)

[※] 논문종류는 학위논문(석.박사), 국내학회지, 국외학회지, 대학논문, 저서, 정기간행물 … 등으로 표기

[※] 연구자명은 원본의 순서대로 모두 기재할 것.

[※] 게재지명은 정확히 기재할 것.

[※] 연구실적의 내용 요지는 연구실적물별로 6-1의 양식에 A4 1∼3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첨부할 것.

6-1. 논문내용 요지

일련번호	논	문	제	목

위의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임용된 이후에도 대학당국의 임용취소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교수 초빙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교원 신규채용 서류심사 조서

응시	분야					대흐	교	학과		÷	전공		
응시	과목			학		대학	원 석시	·과정	학과	:	전공학위		
응시	번호					대흐	원 박시	·과정	학과	;	전공학위		
주민								최	종학위	논문	·제목		
번	호			력									
성	명												
학부	성적												
		근 무	처	2	딕 명		근	무시간		혼	산 율		환산시간
	연												
	구												
	경 력												
경) j												
력		소	계										
		근 무	처	2	딕 명		근!	무시간		혼	산 율		환산시간
사	교												
항	육												
	경 력												
	57												
		소	계										
	총		계										
발 표	표 회	구	분			기	간 (년,	월)				5	위
	<u></u>												
기타	경력 												
서	류 심 /	사 결 과			가	ı					부		
작 성	성 자			(인)		확 인	자					(인)

교원 신규임용 평가 총괄표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채 용 분 야 :

응시 번호	성 명	전공일치 여 부	연구업적 평 가	강의능력 평 가	면접평가	총 점	순 위	비고
	만점	50	50	100	100	300		

[별표1]

연구업적 평가 기준표

1. 인문, 사회, 예체능 전체 계열

연 구 실 적	기 준 점 수
1. 박사학위 논문 2. 석사학위 논문 3. 국내외 저명학술지	200 % 100 %
4. 국외 번역 및 편저서 5.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6. 국내외 학술상 수상	" "
7. 국내외 전문서적 8. 학술자료집 9. 문화재 복원	" "
10. 국가 포상 및 훈장(장관상 이상)	"

2.예·체능계열인정 평가점수

분야별	연 구 실 적	기준점수
미술	1. 개인전 2. 2인 이상 - 5인 이하 단체전 3. 5인 이상 단체전 4. 국제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1회 이상 5. 도단위 이상 대회 심사위원	100 % 50 % 25 % 100 % 50 %
암	 독창회, 독주회, 개인 작곡발표회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 콩쿨 1위 입상 오페라 주연 1회 오페라 및 오케스트라(시립 이상 지휘) 오케스트라 및 실내악단과의 협연 2인 이상 - 5인 이하 발표회 도단위 이상 대회 심사위원 	100 % 50 %
체 육	1. 국제 경기감독 및 코치로 출전 2. 기타 국제대회 입상 3. 도단위 이상 심사위원	100 % 50 %
무용	1.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페스티벌 초청 발표 2. 국내외 공인된 장소에서의 안무지도 및 개인 무용전 발표 3. 국내외 공인된 장소에서의 안무지도 및 다른 무용단 과 의합동발표 4. 공동 안무 및 공동출연의 실적물 인정 환산율 1) 2인 이상 - 5인 이하 2) 5인 이상	100 __ % 50 % 50 % 25 %
연	 공인된 드라마 주연 출연 공인된 드라마 연출, 기획 연극 발표회 주연 출연 연극 발표회 감독 및 기획 공인된 드라마 조연 출연 연극 발표회 조연 출연 	100 % ~ 50 %

교수자격인정 심사규칙

가. 교원경력년수 환산표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②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	100 100 70 60
© Un IL EEUn MEOMH E401	50(단, 주당 5시간 이하는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학과 목과 부합되는 경우	50
② 3년제 고등 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50
③ 초등학교 교사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 계되는 경우	50
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 과 연계되는 경우 다. 조교 및 체육코치	50
① 대학(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②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2. 연구경력 가. 최종학위 취득자	50
①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 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 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그 연 구경력 나. 최종학위과정 수료자 등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 과할 수 없다)
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 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 구경력	박사과정 재학년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 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 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 경력 라.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100
① 국가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② 기타 대학 부설 연구소 및 산업체 연구경력 3. 산업체 등 근무경력	30
가. 국가기관등 근무경력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포함) 에서 당해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 력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 업에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나.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	60
①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 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 에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 한 경력	50
④ 대학(전문대학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대기업체 등 중기업체	5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② 변호사 개업기간 ③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변리사 개업기간 ④ 한국해양대학, 부산수산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70 50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 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 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라. 의사등 근무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 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50
②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50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사 ④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경력	70 5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마. 성직자 근무경력	
①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50
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 예·체능 관련단체 주요 임원	
①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국립단체 주요간부	70
②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국립단체 일반단원	50
③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시립단체 주요간부 및 일반단원	30

나. 교원경력 소요년수표<개정 2013.12.4>

구 분	대학졸	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대 학 교 수	4	6	10	5	8	13		
대학 부교수	3	4	7	4	6	10		
대학 조교수	2	2	4	3	4	7		
조 교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음.